

청렴 소통의 시간

감 사 실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

국가청렴도 7.0 유지
시

1.4%P 상승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31% 상승



26% 상승



25% 상승



\$4,713 상승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시립대)

※ 한국행정학회

⇒ 청렴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자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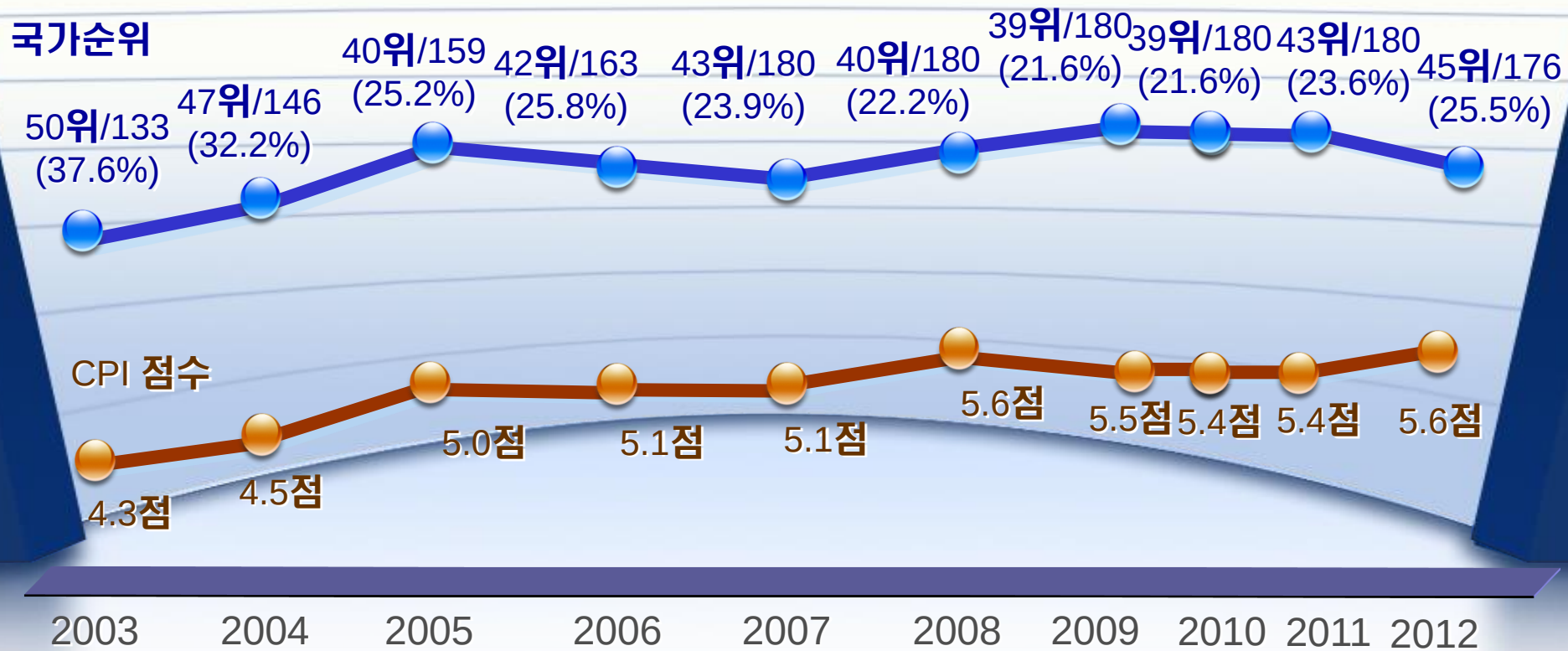
〈참고 1〉 남유럽의 그리스

- 남유럽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의 대규모 재정 적자
 - EU, IMF 등의 국제 원조 없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직면

〈 오스트리아 요한스 켈퍼대학 슈나이더 교수〉

- . 그리스 소득세 징수율은 GDP의 4.7%로서 EU 평균 8%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세금의 1/4이 탈세되고** 있으며, **탈세금액의 1/3이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
- . 그리스 CPI 지수 : 08년(4.6점, 57위) → 09년(3.8점, 71위) → 10년(3.5점, 7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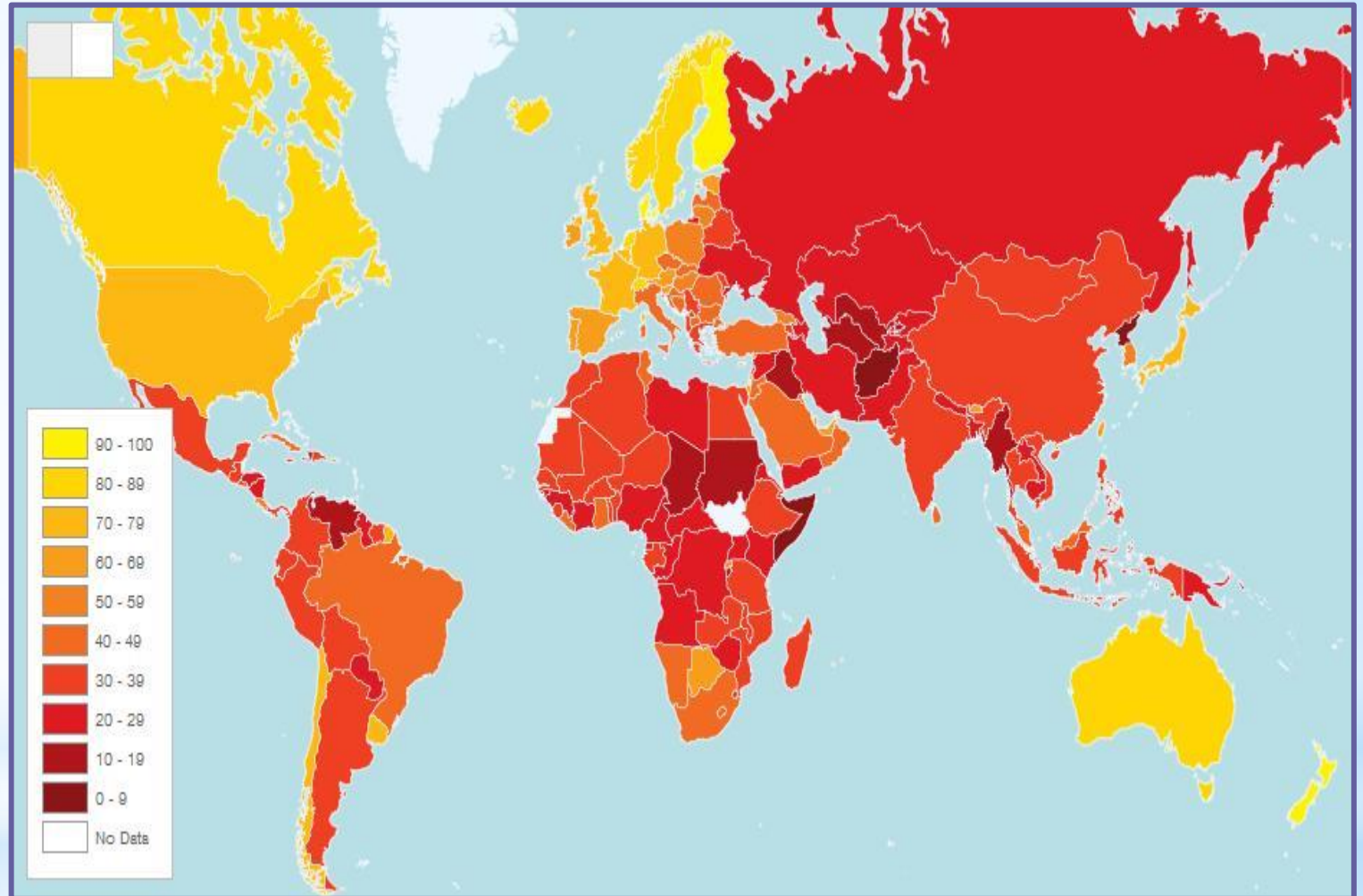
<참고2>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추이



〈참고3 201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

2012 세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100점 만점, 낮을 수록 부패 심함



1. 청렴이란 ?

■ 사전적 정의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

-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의 율기육조(律己六條) 중, 제1조와 제2조가 칙궁(飭躬)과 청심(淸心)으로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청렴'하라는 뜻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 부패여부, 부패위험 및 부패인식 정도

2. 청렴도 측정 개요 및 결과

■ 측정 개요

- 대상기관 : 총 653개 기관 중 준정부기관(86개)으로 분류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고객) 300명, 내부청렴도(직원) 150명

■ 측정 결과

구 분	2012년	2013년	증 감	비 고
종합청렴도	8.04	8.18	+0.14	
1) 외부청렴도	8.28	8.24	-0.04	
2) 내부청렴도	8.14	8.28	+0.14	
감 점	-0.20	-0.07	+0.13	

3. 청렴도 제고 방안

■ 외부청렴도

-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투명성 강조)
 - 상담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
- 공정한 업무처리 및 설명을 통한 부패인식 차단(공정성 강조)
 - 고객 제공 각종 안내문에 공정한 업무처리 강조 문구 사용
(예시) '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고객중심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필요(책임성 강조)
 - 업무담당 실명제 적극 실천

3. 청렴도 제고 방안

■ 내부청렴도

- 예산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제고
 - 감사, 예산, 회계부서의 수시 점검 강화
 - 월례조회 등을 활용한 예산 집행 현황 공유
 - 업무지시 공정성 강화
 -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
 - 국민연금 헬프라인(외부업체 운영), 부조리신고센터
-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 > 클린센터

4. 임직원 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

구 분	세부내용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임직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됨

■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

구 분	세부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이란, 업무용 차량, 사무용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기금운용관련 서류 · 기물 · 지적 자산 등 공단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을 말함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됨. 다만,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가능함